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097

발의연월일: 2024. 7. 22.

발 의 자:이병진・임미애・윤후덕

송옥주 · 이상식 · 한정애

민병덕 • 권칠승 • 이개호

임호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장치산업으로서 전력·용수·폐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, 현행법상 지원이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어 미국·중국·대 만 등 주요국 대비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국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를 촉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).

법률 제 호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2항 중 "지원할 수 있다"를 "지원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해당 비용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특화단지 조성・운영 지	제20조(특화단지 조성・운영 지
원) ① (생 략)	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	②
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	
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	
자가 우선적으로 <u>지원할 수 있</u>	<u>지원하여야 한</u>
<u>다</u> .	<u>다</u> .
<u> <신 설></u>	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
	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
	경우 해당 비용의 50퍼센트 이
	<u>상을 지원하여야 한다.</u>
<u>③</u> ~ <u>⑥</u> (생 략)	<u>④</u> ~ <u>⑦</u> (현행 제3항부터 제6
	항까지와 같음)